

2014년 2/4분기 임시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일 시	2014년 6월 13일(금) 11:00~12:00	장 소	복지관 3층 대회의실
참석자	운영위원(6명) - 이대훈 위원장, 신재윤 위원, 한성봉 위원, 허진옥 위원, 정경숙 위원 김종필 위원(강문회 복지관담당공무원 위임) 직 원(3명) - 최미영 사무국장, 박수련 과장, 박중석 과장 서 기(1명) - 서희영 팀장		
회의내용	1. 개회 및 위원 인사 운영위원 총 9명 중 김천수 위원, 윤명화 위원, 조원일 위원이 불참하여 6명의 운영위원 참석으로 성원이 구성되어 개회를 선언하다. 2. 신임위원 위촉장 수여 및 인사소개 이현배, 엄복환 위원이 지난 4월 30일 정기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임되었고 후임으로 정경숙, 허진옥 위원이 위촉되어 상호 인사 소개가 먼저인 것 같아 순서를 바꿔 진행하고자 한다. 최미영사무국장이 두 위원을 소개하다. 정경숙 위원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주영성 이용자의 어머니로 주간보호시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협력하여 주고 계시며, 허진옥 위원은 1994년부터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을 인연으로 장애인봉사단 단장 역할을 통해 동료상담, 학교, 어린이집의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후원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복지관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으며, 올해부터 재가장애인이용자 대표 협의회 회장에 선출되시어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음을 보고하다. 위원장 : 각오 한마디씩을 부탁드립니다. 허진옥 : 이용자 대표협의회 회장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장애인 이용자와 복지관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싶음. 시각장애가 중복되어 먼저 알아보고 인사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부탁한다. 정경숙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3. 설명기도 - 최미영 사무국장 4. 전 회의록 낭독 및 보고 먼저 허진옥 위원을 배려하여 자료를 준비하지 못함을 사과 하고 다음 회의부터는 자료의 글자 포인트를 크게 하여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양해 부탁하다. 중랑구청에서 타 구에 비해 적은 장애인주간보호사업의 확대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복지관 규정 개정(안)의 필요성 및 근거, 규정 및 지침의 제정 및 개폐절차,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운영규정, 인사관리규정, 복무관리규정의 심의를 진행하여 수정 통과됨과 운영위원 이임 인사 및 신규위원 보고 및 4대 박성배관장의 원불교인사로 인해 퇴임하고 차기 관장 임명 시까지 최미영 사무국장이 직무대리 중에 있음을 보고하다.		

5. 신입 관장 소개 - 위원장이 사무국장에게 신입관장의 소개를 부탁하다. 사무국장 : 장애인복지관에 그리 어색하지 않은 것은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유린보은동산 법인 사무국장으로 7년간 근무하여 직원과 이용자들에게 낯설지 않음을 소개하다. - 위원장 : 원불교 교무이면서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을 가지고 현재 전문적인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단국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자격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개발 성장 발전시킬 관장으로 여겨진다. 관장인사 : 상을 놓는 공부를 끝임 없이 해가고자 하면 주위의 많은 견책을 부탁하며 사람중심의 복지관, 새 옷을 입을 때의 마음(조심스러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경외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 부탁하다. 6. 심의사항 1) 관장 임용 자격 승인 사무국장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의거 관장의 자격기준을 설명하고 신재운 관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관 근무를 합하여 12년의 경력,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이 있으나 ②항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근무경력에 미달되어 ⑤항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 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의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임용 자격 결의가 필요하여 요청함을 설명하다. 위원장 :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한 경력은 아니더라도 위의 경력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의원들의 의견부탁하자 모두 동의하고 결의하다. 2) 규정집 발간 보고 사무국장이 발간된 규정집에 대해 설명하다 중요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될수 있도록 규정으로 개편하였으며 규정, 지침 개정시 개폐절차 신설하고 서비스 관리지침에서 개인정보강화에 따른 대폭 수정되었고 또한 부록으로 규정집 발간의 근거 법령 및 자료를 수록하고 전 직원에 대한 규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하다. 위원장 : 규정은 잘 만들고 특별한 사유없이 수정을 하지 말고 수정사항은 공의를 거쳐 의결해야 하며 몇몇의 회의에서 고치는 것이 아닌 의견수렴 기간이 필요하고 직원들 간의 공청회도 이루어져야 한다. 수시로 바뀌는 지침은 바인더로 만들어 수정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운영팀장, 국장, 관장은 지침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점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무국장 : 신입 인사위원에게 활동보조인 활보 정년 65세로 정해져 1년마다 회의를 통해 2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이번 규정 개정으로 원칙은 65세이나 1년마다 회의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수정됨을 알리다. 허진옥 : 65세 정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문의하다. 사무국장 :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정년이 없으나 안전을 위해 복지관에서 임의로 정함을 설명하다. 허진옥 : 장애인 입장에서 잘 바뀐 사항인 것 같다. 7. 공지사항 위원장 : 운영위원회를 년 4회만 개최하지 말고 복지관에 사안이 발생하였을 시 개최하고 최소 2달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한다,
--

	8. 폐회	
회의사진	 	
정책건의	없음.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